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안 번호	2356
----------	------

이영실 의원 (더불어민주당, 중랑1)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영실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29명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한강공원 내 수상시설의 안전한 시민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. 하지만 최근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및 서울로얄마리나 침수 사고를 통해 부상형 시설의 관리 부실 및 검사 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, 조례 개정을 통해 정밀검사 등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합니다. 또한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보고 사항을 추가하여, 한강공원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

-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원칙에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제3호)을 추가하고,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(안 제8조제3항) 및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제3항)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